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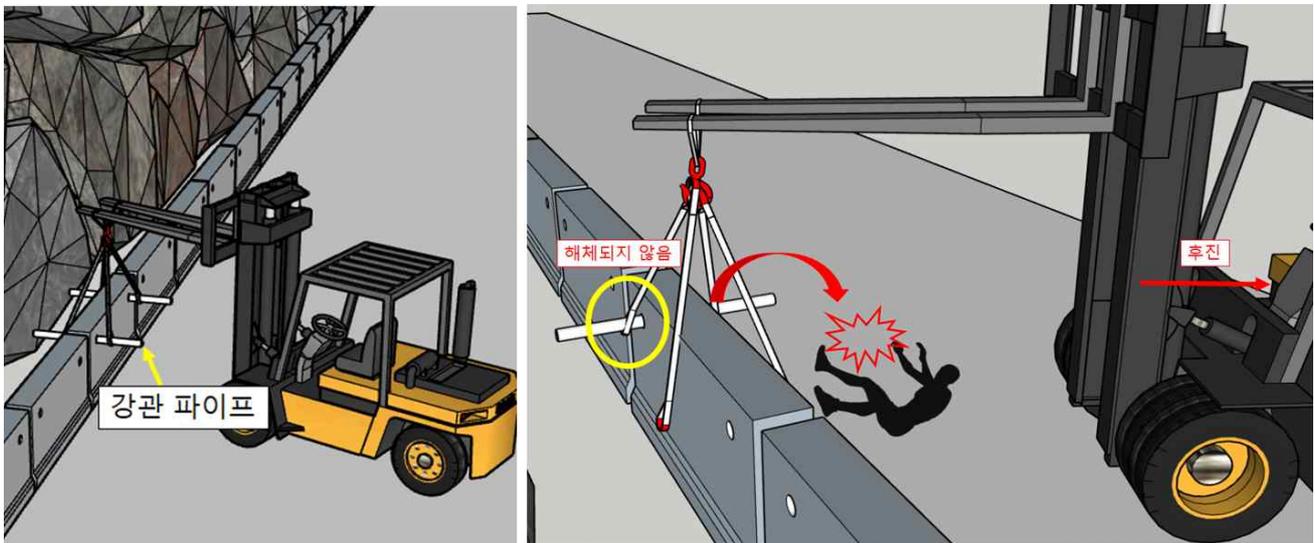


재해 개요

- 2023. 8. 8.(화) 14:10경, 경기도 □□시 △△면 소재 「○○○」 공사 현장에서, 절토부* 소단**의 콘크리트 방호벽 설치작업 중 지게차 포크에 설치한 벨트슬링을 방호벽의 운반걸이에 걸어 이동시킨 후, 콘크리트 방호벽에서 운반걸이와 벨트슬링을 해체하던 중 재해자 방향으로 콘크리트 방호벽이 넘어지며 깔림

* 평지나 경사지를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 낸 곳

** 비탈면이 긴 경우 비탈면 중간에 설치하는 작은 계단 또는 좁은 통로



재해 발생 원인

- **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·유도자 미배치**
 - 무게가 약 1.8Ton인 콘크리트 방호벽은 중량물에 해당되며,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(지게차)를 사용하는 작업은 작업구간의 지형·지반상태를 사전에 조사하고, 해당 기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운행경로 지정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
 - 작업계획서 상 지정된 작업지휘자는 현장에 부재하였으며, 유도자 배치 없이 작업 실시



재해 예방 대책

- **현장상황에 맞는 작업계획 수립 철저**
 - 현장의 좁은 작업구간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비를 투입하도록 계획하고, 줄걸이 작업 시 작업방법·순서 및 명확한 신호방법 등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- **작업지휘자 배치**
 - 지게차의 안전한 이동경로, 근로자와의 접촉방지, 중량물 취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, 작업지휘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
※ 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·직영·도급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